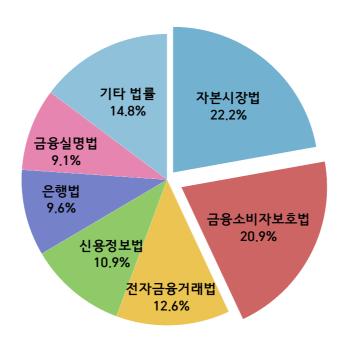


# NH Bank legal brief

# 은행 관련 최근 제재 사례 분석 (2019.1.~2022.9)

2022. 10. 6.

# < 제재조치 근거법률 기준 제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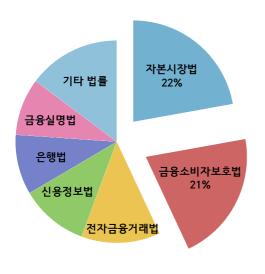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 2019.1. ~ 2022.9.>

# ※ 리걸브리프 활용법

- ⇒ 본문의 "☞ <u>위반 행위 확인하기</u>"를 클릭하면 관련「붙임문서」로 바로 이동합니다.
- ⇒ 각「붙임문서」하단의 "▶**문서의 처음**"을 클릭하면「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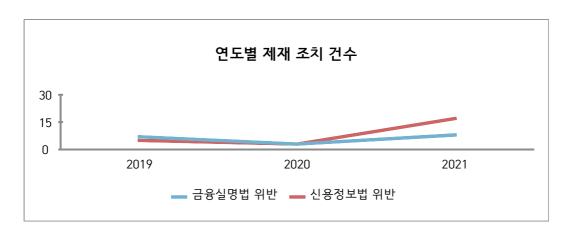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에 대한 제재 사례 총 230건(제재조치 근거법률 기준) 중 「자본시장법」및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자본시장법」위반 사례 중에서는 ▲신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위반(47.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위반(41.2%) 사례가 가장 많았음
  - ☞ 위반 행위 확인하기
-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사례에는 6대 판매규제 모두에 대한 위반 사례가 존재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 ▲설명의무 위반(29.2%) ▲불공정영업행위 규제 위반(25%) ▲적합성 원칙 위반(20.8%) 사례가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위반 행위 확인하기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례(86.2%)이며, 위반행위 유형이 다양하므로 주의 요함 ☞ 위반 행위 확인하기
- □ 「은행법」위반 사례는 ▲건전성 규제 위반 사례(54.5%)가 가장 많았고, ▲영업행위 규제 위반(22.7%) ▲감독 및 제재 관련 규제 위반(22.7%) 사례가 그 뒤를 이었음

  ☞ 위반 행위 확인하기
- □ 「금융실명법」및「신용정보법」위반 사례는 전체 제재 사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실명법」위반 사례 중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높은 빈도(61.9%)를 보였으며, 구체적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하고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 도록 주의 요함 ☞ 위반 행위 확인하기
- 「신용정보법」위반 사례 중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유통·관리 관련 규제'를 위반한 경우가 절반 이상(64%)을 차지하였음 ☞ 위반 행위 확인하기
- □ 기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위반 행위 확인하기
  -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3.9%)
  - ㅇ「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3.9%)
  - ㅇ「여신전문금융업법」(3.0%)
  - ㅇ「외국환거래법」(1.7%)
  - ㅇ「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0.4%)
  -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0.4%)

#### 법무지원국 규제대응지원반

박혜원 반장

노은호 변호사

윤정은 변호사

7 02. 2080. 8741 @ hwonpark @nonghyup.com ☼ 02. 2080. 8745② eunho\_noh②nonghyup.com

**3** 02. 2080. 8739 **2** jeyun8835 **2** @nonghyup.com



# [붙임 1]

# 「자본시장법」위반 사례

#### ※ 법 제·개정 등으로 제재 근거 규정이 달라진 경우 현행법 규정을 기재하였음

# ① 「금융투자업자(공통)」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 중 7.8%)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55)
  - 은행장 등 임원들은 기 판매하였던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투자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하고 개인별부담액을 정해 자금을 각출하여 수익증권 투자자인 공무원에게 투자손실보전 금액 등을 사후에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투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 (§60)
  -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채 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음
-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기록 작성·유지의무 위반 (§45)
  - 계열회사와 금융상품의 신규 상품정보를 교류하고 소개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등 유선, 메일, 대면회의 등의 방식으로 회의, 통신을 하였음에도 회의, 통신기록부 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위반 (41.2%)

-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71 7호)
  - 5개 회사의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매매호가 등을 정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하여 매매호가의 변경을 요구하였음
  - 통화스왑거래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에 게 매매호가 공유를 요청하고 매매호가를 전달받음



# ■ 자기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이용 (§71 7호)

■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투자권유가 금지된 자기 발행 고 위험 채무증권을 영업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동 채무증권을 단일 운용 대상으로 하는 5개의 사모펀드 출시를 협의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매매 권유하여 투자하게 함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166의2)

■ 일반투자자 38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위험회피 대상인 수출입 실적의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대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위험회피대상인 수출입 실적을 초과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

#### ■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 권유** (§71 5호)

■ 동일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하여금 전산상 판매자로 대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없이 판매함

#### ③ 「신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위반 (47.1%)

####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108 9호)

■ 4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59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108 9호)

-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 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의 고객에게 파생상품 특정금전 신탁계약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강화 조치를 뒤늦게 시행하여 영업점에서 파생 상품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계약 의 투자를 권유하게 함



#### ■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108 9호)

■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 정에서 264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 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 ■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108 9호)

■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ELS(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판매일로부터 1~56일 이후에 사후 녹취하였음

# ■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103 ③)

■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목표수익률을 고객이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하게 하였음

####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108 9호)

■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인 고객들의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자사의 정기예금 에 예치·운용하였음

#### ■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105, §108)

■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후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 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 지 않았음

#### ■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246 ⑤)

■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에 운용지시에 따른 사모사채원리 금 상환액이 일부만 입금되어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한은금융망을 통해 은행자금으로 판매사와 우선 정산한 후, 환매대금 미입금으로 인한 자금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타 펀드의 재산(예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마감함으로써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함



# ■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 (§246 ⑤)

■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정 펀드에 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자 자금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운용지시 없이 수탁한 펀드의 재산을 임의로 감소시킴

#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확인의무 위반 (§246 ⑤)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및 관련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안 건을 수령하지 않음

#### **④ 기타** 규제 위반 (3.9%)

- 금융투자상품의 무인가 투자중개 (§11, §12)
  -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외화채권 매매거래에 대해 투자권유, 거래조건 협 의 등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음
-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119, §120, §124)
  - 집합투자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총 4,600명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 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하였음
-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제 위반** (§249의5①)
  - 다수의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 광고를 하였음



# [붙임 2]

#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사례

#### ※ 법 제·개정 등으로 제재 근거 규정이 달라진 경우 현행법 규정을 기재하였음

# ① **적합성원칙 위반(§17)**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 중 20.8%)

- 투자자 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및 투자자 정보확인서 교부를 누락하거나 투자자 정 보확인서상 투자자성향 설문지 항목을 판매직원이 임의작성하거나 대필 기재함
-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283건을 판매하면서 해당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상향하였음
- 투자자정보 확인서 누락
- 투자자정보 확인서 징구 누락

#### ② 적성성원칙 위반(§18) (12.5%)

- 특정금전신탁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투자 자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것으로 확인되어 상품 위험도가 '다소높은위험' 으로 분류된 해당 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알리 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음
- 투자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닌 투자자에게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상품이 적 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투자자성향 및 상품위험 등급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판매직원이 임의작성 또는 대필 기재함

# ③ 설명의무 위반(§19) (29.2%)

-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음
- 중요사항에 대하여 왜곡하여 설명함



- 펀드, 신탁상품의 주요내용, 주요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고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지 않음
- 한 종목의 채권만을 편입한 총 140개 펀드의 판매를 위해 설명자료를 판매직원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만기가 해당 펀드의 만기보다 늦게 도래한다는 사실 및이에 따라 펀드 만기일에 채권이 시장에서 매도되지 않을 경우 펀드 상환이 되지 않을 위험 등을 누락하여 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함
- 일반투자자 상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자산) 설명서에 중국외환관리국(SAFE) 등기 미완료 사실을 기재 누락한 상태로 영업점에 배포하였음
- 본부에서 PB들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을 안내하면서 과거데이터에 기반하여 손실발생확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인식하에서 PB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설명하여 투자 시 감내 가능한 손실규모에 대해 투자자들이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사실상 부여하지 않는 결과 초래

# **④ 불공정영업행위(§20)** (25%)

#### ■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중소기업인 차주 회사에게 취급한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축성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계약 해지일까지 총 14백만원을 수취
- 차주인 회사의 대표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관련 여신 2건 연장 실행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함에 따라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펀드 10건 판매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차주에게 저축성 보험이 판매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여신 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함



#### ■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

■ 여신거래처에 실행한 여신 1건을 일부 갱신하면서 동 거래처 고용임원에게 연 대입보를 요구하여 근보증 약정을 체결함

#### ■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 기존 취급 여신을 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동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약정도 체결토록 요구함
- 여신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함

#### ■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 여신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 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였음

#### ■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의무 위반

■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금액을 하회한 다는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지급보증서 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음

# (5) 부당권유 금지(§21) (6.3%)

- 펀드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설명하거나 '원금을 OO은행에서 책임져요?' '3.4% 주는 건 틀림없다?'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고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
- 펀드 투자금으로 다른 펀드의 돌려막기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은폐하였음
-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손실이 절대로 없음"이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불확실한 사항(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 ⑥ 광고 규제 위반(§22) (6.3%)

■ 사모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광고메시지에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포함하고 준법감시 인 심사필 누락함



# [붙임 3]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 ①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2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중 86.2%)

#### ■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 전산원장의 변경을 허용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통제절차를 운용하지 않았음

#### ■ 시스템 구축 및 통제 부적정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통합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 등 테 스트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업무를 전산자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주로 계약관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은행 IT인력의 대규모 IT사업 관리경험 부재 및 전문성 결여
- 차세대시스템의 운영시스템 적용에 있어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테스트 유형을 누락하는 등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 미실시
- 모바일뱅킹 내 일부 기능을 추가·변경 후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음

#### ■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사용하였고,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환경설정 파일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사용하였음
-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였음



■ 내부사용자 비밀번호에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8 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지 아니하였음

#### ■ 공개용 웹서버 해킹방지대책 불철저

■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대량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사이버공격으로 시 로그인 이 된 ID로 부정접속을 통해 고객의 인적사항, 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 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하는 등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

# ■ 스마트뱅킹시스템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한 '최초 비밀번호'의 임의 등록 (§21)

-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장기 미사용 고객 비밀번호를 임시 비밀번호로 임의로 등록
- 스마트뱅킹 이용자가 임시 비밀번호로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별도 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비밀번호 등록·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

# ■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 허용
-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정보처리 시스템의 제조·공 급사로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대용량 저장장치 장비에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각 제조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송신함
- 망분리 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 그룹사에서 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함
-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은 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함

#### ■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 데이터 백업 및 보관기간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중요도에 따른 전산 자료의 보존기간을 잘못 설정함에 따라 서버의 가동기록이 보존된 로그파일을 가동기록 백업일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1개월간만 보존함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항목 중 데이터베이스 보안 항목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가 취약하게 운영되도록 방치함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스템 테스트 시 실이용자 정보가 보관된 운영서버 DB에 접속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 통제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 를 사용함
-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운용 위반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 ② 이용자 보호 위반 (13.8%)

-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8)
  - 모바일뱅킹 내 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 대해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가 지난 후 오류 원인과 처리결과를 통지함
-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25)
-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24)



# [붙임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위반 사례

# 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유통·관리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 중 64%)

#### ■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용도외 이용 (§17)

■ 개인신용정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엄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계약에 따라 OO카드로부터 매월 제공받아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중인 임직원의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감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내부감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연체정보 오류 등록 (§18)

-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사유가 해 소된 신용카드회원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고객 138명의 개인대출정보를 오류 등록하였음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19)

- 고객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시스템이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소홀
-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체결의무 위반 (§19②)
-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 위반 (§20의2)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 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에도 특정 시스템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하지 않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음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 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②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36%)

# ■ 신용정보활용체계 공시의무 위반 (§31)

■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등 공시를 누락하였음

#### ■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33)

- 본인 소송 등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4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인하여 고객이 동의를 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결과를 초 래하였음

#### ■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동의절차 미준수 (§32)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 방식으로 개인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대출신청 고객 12명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35건을 조회함
- 임직원의 금융사고 조사 및 예방 명목으로 임의보관 중인 전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신한은행 고객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금융사고 조사 등에 이용하였음
- 저축은행 등 계열사의 상품을 소개 영업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



■ 농기계 판매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동 업체의 연대보증 하에 단체성 대출을 취급 하면서 최초 대출시 차주로부터 내용이 부실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차주의 개인 식별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농기계 판매업체에 제공하 였음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33)

■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을 동의한 것으로 고객관리자시스템에 잘못 입력함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이용



# [붙임 5]

# 「은행법」위반 사례

#### ※ 법 제·개정 등으로 제재 근거 규정이 달라진 경우 현행법 규정을 기재하였음

# ① 건전성 규제 (은행법 위반 사례 중 54.3%)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35의2④)
  -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일부 이사가 불참하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신용공여를 의결하고 실행함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35의2⑤)
  - 은행이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장(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35의3)
  - 특수관계인 2인에 대한 투자금액이 각각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현황을 공시하면서 동 회사들에 대한 출자현황을 포함하지 않음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37)
  - 은행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에 중국의 A자산관리유한공사는 '자산관리 등'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신고한 후 25% 취득하였으나, 동 공사는 최초 설립시 부터 중국법규상 자산관리업 영위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음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업무 부적정 (§34)

- 해외점포에 대한 시장리스크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2조 630억원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 산출시 자본공제 항목을 일부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97억원 과다 계상함으로써 BIS비율을 과다 산출하였음
- 투기지역 소재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제한 위반 등 (법 §34 및 규정 §29의2 <별표6>)
- 지급목적 등 여신심사 불철저 (법 §34 및 규정 §78)
  - 임대사업자인 차주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가 임대사업자로서 시설자금 용도인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취급하여 차주의 차입목적에 맞는 적정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 회계처리기준 위반 (법 §3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 )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종속기업의 주요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다른 예상손실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 동 은행의 연결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누락
  -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및 파생상품 계약금액 과대 공시
  - 미결제 현물환 관련 자산·부채 계상 누락

#### ② 영업행위 규제 (22.7%)

-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법 §34의2, 시행령 §20의2 3호, 규정 §29의3② 4호)
  -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익 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질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여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 OOOO 소속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OOOO이 투자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OOOO의 결산시점에 허위의 수익증권 및 정기예금 잔액 확인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부당발급함으로써 OOOO의 재무제표 분식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



- 임직원 대출 취급시 우대금리 부당 적용 등 (법 §38 6호, 규정 §56, 시행세칙 §43)
  -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소액대출한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소액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할 경우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야 함에 도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대 금리조건을 적용하는 등 임직원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 재산상 이익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34의2 3호)

■ OO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후 OO시에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1,000억원으로 제안하고,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등을 포함하는 금고 운영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해당 비용 중 일부는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필요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였음

# ■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34의2 1호)

■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전산 조작 당일 카드대출 한도가 복원된 이후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처리함

# ③ 감독 및 검사 (22.7%)

####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43의2 ③)

■ 금융감독원 부분검사 당시,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OOO의 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前 인사부장은 최종면접에 서 OOO의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정 前 평가점수 를 검사반에 제출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업무를 방해하였음

#### ■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47 8호)

-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 출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47 10호)



-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등 (§48 등)
  -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자료 삭제 및 관련 사실관계 은폐
  -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검사 관련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 공시 (§52의2)
  - 은행내규, 상품설명서 및 신탁계약서에 따라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도, 대출상품 96개에 대해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이 부담한다고 공시하는 등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음



# [붙임 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위반 사례

# ①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법 §3 및 특정금융정보법 §5의2)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 중 61.9%)

-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금융거래 를 하여야 함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개설하였음
-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하여 본인 동의와 실명확인 없이 계좌 개설함
- 금융회사는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해야 함에도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 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하여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함
- 명의인의 자녀 등인 영업점 직원이 계좌개설 당시 이미 사망한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하여 계좌를 개설함
- 계좌개설 당시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과거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던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함
-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 을 소홀히 한 채 계좌를 개설함
- 망인의 배우자 요청으로 망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의 계좌 개설함
- 가족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 망인 명의의 계좌를 가족 대리인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제적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을 징구함
-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본인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 하였으나 전산 조작 실수로 사망한 동명이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망인 명의의 계좌를 가족이 아닌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

# ②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4①) (9.5%)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안됨에도 은행 직원은 본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명의 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여 OO에 제출함
- 고객의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법무법인과 체결한 포괄적인 법률고문계약서를 근거로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등을 명의인 동의없이 동 법무법인에 제공하였음

# ③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4의2) (19%)

- 금융회사등은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제 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금융회사등은 법령상의 이유로 거래정보 제공 요청자로부터 명의인에 대한 통보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통보를 유예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④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 기록, 관리 의무 위반(§4의3) (9.5%)

■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 관리함



# [붙임 7]

# 기타 법률 위반 사례

# ① 「금융사지배구조법」위반 (전체 제재 사례 중 3.9%)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24)

-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정비 조치를 취하지 않아 PB들에게 무리한 편 드판매 목표를 요구하고 과도한 경쟁 환경에 노출시켜 불완전판매 환경이 조성됨
- 사모펀드 출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18)

■ 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입찰 참여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전산구축 비용을 적게 책정하여 출연금 한도가 과다 산출된 정보를 제공하였음

# ■ 감사위원회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20)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25⑥, §28②)

■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함에도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 ■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7②)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 홈페 이지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14명에 대하여 이를 누락함

# ② 「특정금융정보법」위반 (3.9%)

####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4의2)

-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 서 동 시스템상 외부 전송용 보고서 파일 생성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보고가 누락됨
-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특정 유형의 고액현금거래가 보고대상으로 추출되지 않아 지연 보고 하는 등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음

#### ■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업무 불철저 (§5)

-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따라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과거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그 배경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객의 직업 및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검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임직원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확정한 금융거래를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 보고하는 등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음

# ■ 고액 고객 확인의무 위반 (§5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 거나 2천만원(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 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토제하는 자연인의 성 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함
-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신규계좌 개설 등에 대해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명만을 확인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오인하여 당해 법인고객 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음



# ③「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3.0%)

#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14)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13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부산시 소재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옥외 주차장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안됨에도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 여신금융거래 관련 약관변경 시 사후보고 의무 위반 (§54의3)

- 약관을 개정한 후 10일 안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 신청서 및 이용약관' 및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 (뉴리볼빙) 결제신청 및 약정서'를 개정하면서 77일이 경과하고 나서 지연 보고 하였음
- 선불카드 약관 제정시 보고의무 불이행 (§54의3)
-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24)
  - 수협 회원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이용한도 상향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회원조합이 심사하고 은행에서는 단순히 전산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의 이용한도 상향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자인 수협은행이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음

# ④「외국환거래법」위반 (1.7%)

# ■ 검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거짓자료 제출 (§20④)

■ 금융감독원장이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지급업무 취급 시 거래당사자 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증빙서류 원본 대신 사후적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은 거짓자료를 제출 하였음



-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16 3호)
  - 거주자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함에 따라 제3자 지급이 되어 신고대상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
-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8⑥)
  - 미화 5천불 초과 외국환거래 취급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8⑥)
  -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미화 5만불 초과 수령의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66,600건 중 3,500건을 보관하지 아니함

#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0.4%)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의무 위반 (§33)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DC와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33)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법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야 함에도 기한 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⑥「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0.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5, §7)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사기이용 의심계좌로 보아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누락
  - 지급정지에 대한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접수하고도 해당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지 않음